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40
----------	-------

발의연월일 : 2026. 1. 9.

발 의 자 : 박지혜·이주희·윤준병
김상욱·박 정·박지원
전진숙·강준현·문금주
김영환·이용선·박정현
김준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조달 수단의 확보가 필수적임. 현행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매각대금,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등 기존 세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수입 변동성이 크고,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대응과 녹색전환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녹색국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의 목적성을 강화하고 민간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존 재원에 더해 새로운 재원 조달 수단을 제도

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에 녹색국채를 추가하고, 녹색국채 발행 근거와 자금 사용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69조의2에 따른 녹색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녹색채권의 발행)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색채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녹색채권은 그 발행 목적에 맞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발행 시 해당 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녹색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⑤ 녹색채권의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과 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의 재원 중 제69조제2항제8호에 따른 녹색채권으로 조성된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녹색채권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생 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8. · 9. (생 략) ③ · ④ (생 략) <u><신 설></u>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69조의2에 따른 녹색채권 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9. · 10. (현행 제8호 및 제9호 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u>제69조의2(녹색채권의 발행) ①</u> <u>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u> <u>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u> <u>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u> <u>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u> <u>금의 부담으로 녹색채권을 발</u> <u>행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녹색채권은 기후에</u> <u>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u> <u>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녹색채권은</u> <u>그 발행 목적에 맞는 특정 용</u> <u>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발행</u>

